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과 도시계획국간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면서,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4일에서 2027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14호부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4.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4호 중 “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을 “해외 투자 유치 관련 대내외 협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2025년 1월 24일”을 “2027년 1월 24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2025년 1월 24일”을 “2027년 1월 24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 1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7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 · 조정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계획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u>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u> 에 관한 사항 5. ~ 20. (생 략) 21.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 · 조정 2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계획국)① ~②(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u>해외 투자 유치 관련 대내외 협력</u> 에 관한 사항 5. ~ 20.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17조(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7조(한시정원) ①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 ----- 2027년 1월 24일-----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35</u>	<u>134</u>	-1
·	·	·	
·	·	·	
일반직 계	<u>134</u>	<u>133</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0</u>	<u>129</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3